문서번호	청소행정과-16054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활용담당	청소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이영미	김원식	임근수	손정수	05/04 代손정수	
협 조					

- 음식물처리장치(감량기)구매관련 -

계약내용 일부수정계획

2016. 5

행 정 국

청소행정과

- 음식물처리장치(감량기)구매관련 -

계약내용 일부수정계획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대형감량기를 구매·설치하고자 2015년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5년 렌탈계약을 체결한 바, 업체로 부터 기기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계약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여 이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계약 개요

▢ 기　간 : 계약일(2015.12.8.)로부터 60개월(5년)【장기계속계약】
▢ 대　수 : 40대
▢ 방　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 렌탈금액 : 487천원/대/월(1,168,800천원=40대*487천원*60월)
▢ 납품기한 : 2016. 4. 6

Ⅱ 수정 근거(사유)

▢ 수정사유 : 계약조건중 일부조항[(다),(마)항]이 구체적인 사후조치사항 등이 없어 계약업체가 금융거래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 근 거 조 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원칙)①-----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및절차를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

Ⅲ 계약내용중 일부수정(안)

▢ 계약조건

구 분	現 계약내용	수정(안)
계약조건 (다)항	본 사업 계약체결 후 운영상 문제점 발생 및 주민불만족시등의 사유로 성북구에서 **철거(복구비용업체부담)를요구할때 계약업체는 계약기간중이더라도 이를 수용하여야 함**	본 사업 계약체결 후 주민불만족 및 운영상 문제점 발생시 **즉시 성북구에 보고하고 문제점에 대해 보수 또는 대체장비운영(복구비용업체부담)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조건 (마)항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형감량기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짧은 계약기간으로 운영 업체가 변경되면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은 대형감량기의 평균내구연한인 5년으로 하되, **매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지속여부를 결정함**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형감량기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짧은 계약기간으로 운영 업체가 변경되면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은 대형감량기의 평균 내구연한인 5년으로 한다. 단,매년 **계약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장치운영상 미비점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2015년 1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감량기 구매·설치계약이 체결된 바, 계약업체[(주)태성에코테크]가 원활한 물품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일부수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16. 5. 2	계약업체인 ㈜태성에코테크로부터 계약조건 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접수
2016. 5. 4	계약조건중 일부 내용 수정으로 원활한 물품 납품을 위한 내부방침 수립

Ⅴ 행정 사항

▢ 내부방침 수립 후 계약업체에 계약내용 일부수정사항 공문 통보 조치